

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!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배 의원입니다.
- 이렇게 선배·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「청년기본법」 제26조에 따라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상을 할 수 있으며 그 포상의 기준·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.
- 이에 본의원은 서울특별시시민상 수여대상자에 청년을 추가하고 서울시민상 시상종류, 방법 및 시기에 서울특별시청년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「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

발의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 문제 해결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.
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-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